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65 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김주영·강준현·김기표

김성환 · 김 윤 · 박해철

박희승 · 오세희 · 위성곤

유후덕 • 이기헌 • 정일영

정준호 · 조인철 · 허성무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,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.

다만,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·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,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7항 본문 중 "36주"를 "32주"로, "근로자"를 "근로자(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)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	⑦
내 또는 <u>36주</u> 이후에 있는 여	<u>32주</u> <u>근</u>
성 <u>근로자</u> 가 1일 2시간의 근로	로자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	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
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	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
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	<u>간)</u>
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	
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	
을 허용할 수 있다.	<b>.</b>
⑧ ~ ⑩ (생 략)	⑧ ∼ ⑩ (현행과 같음)